

[]용기
[]냉동기
[]특정설비
제조등록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상호	대표자 성명	
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	전화번호	
	사무소 소재지		
신청내용	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의 종류		

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제1항 전단·제5조의2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[]용기 []냉동기 []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부장관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사업계획서 1부 2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만 해당되며,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였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또는 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외국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의 등록인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) 3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 1부 4.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공장심사 결과서 1부(「고압가스 안전관리법」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외국용기·냉동기·특정설비의 제조등록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2만5천원
산업통상부장관,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절차

